

의안번호	2210628
의 퇴 인	김재원의원
회 답 일	2025. 7. 16.
추계번호	25C302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 1억 5,000만원, 2030년 1억 5,0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억원(연평균 6,0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안 제48조의15)	-	150	-	-	150	300	6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8조의15(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해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제1항)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제3항)	의무규정
2	안 제48조의16(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8조의1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음 1. 지속가능관광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2. 친환경 관광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 3. 지역주민 역량강화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4. 국제 인증 획득을 위한 기술·컨설팅 지원 5. 성과우수 도시 인센티브 지급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8조의15(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 및 지정 취소)	○	
2	안 제48조의16(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	×	- 구체적인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등을 예측할 수 없음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신청과 지정(안 제48조의14) 관련 업무는 별도의 위원회 구성 등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어, 현행의 위원회 또는 관련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별도의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지속가능관광도시의 성과 평가(안 제48조의15)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안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해 3년마다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지속가능관광 도시 지정을 위한 소요시간과 범 시행일 등을 고려하여 최초의 평가는 2027년에 실시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위한 용역비로 3년마다 1억

5,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제5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지정을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 성과평가”를 위하여 2025년도에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 지속가능관광도시 성과평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지속가능관광도시 성과 평가(안 제48조의15)	-	150	-	-	150	30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한 지원(안 제48조의16)

-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속가능관광도시에 대하여 재정 지원 등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1)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또한 지속가능관광도시 지정 이후 성과평가 결과 등에 따라 변동²⁾이 가능한 부분으로 현시점에서 대략의 지원 수준 등을 예측하여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

2) 안 제48조의16제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제48조의15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등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